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가합516925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변론 종결 2023. 5. 25.

판결 선고 2023.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1.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양수인은 양도인이 보유 중인 'D'가 발생한 기명식 보통주 총 6,000,000주 중 1,800,000주를, 1,800,000,000원의 가액으로 양도한다.

제2조

(3) 양수인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양수인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서 제1차 대여금 채권으로 양수인의 신주인수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양수인 발행주식총수 662,984주의 가치를 금 182,347,50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금 275,000원의 합계액이 제1차 대여금액과 같아지는 4,000주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한다.

(4) 양수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수인 발행 주권을 상장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신주를 그 발행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수인: C

양도인: 원고

나. C는 2016. 3. 30. 법인명을 E로 변경등기하였고, 원고는 2018. 4. 6. 피고,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 합의서는 2018년 4월 6.일자로 다음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1. 서울 강동구 F건물, 3층에 주소를 둔 E(이하 '갑')
2. 서울 동작구 G, H호에 주소를 둔 원고(이하 '을')
3.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주소를 둔 피고(이하 '병')

제2조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에 규정된 상장기한까지 값이 상장하지 못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병에게 주식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 또는 병은 을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주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병은 본인이 직접 매수하거나 병이 지정하는 제3자가 을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E는 2018. 12. 31.까지 원고가 인수한 신주를 상장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1. 1. 20.

피고에게 '확인서 체결 이후 원고가 보유한 E의 주식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매년 12월 31일에 1.5억 원씩 누적하여 그 효력이 상실됨을 확인합니다. 즉, 원고는 E 또는 피고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2022. 1. 4. E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소유 E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는 2022. 1. 11. 이 사건 변경합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기로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2. 1.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및 이 사건 변경합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유 E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는 2022. 2. 20.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 소유 E 주식 4,000주 중 3,4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950,125,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22. 3. 10. 피고에게 원고가 가지는 4,000주의 주식 중 원고가 작성한 2021. 1. 20.자 확인서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1억 5,000만 원 상당의 555주를 제외한 3,455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위 이메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아. 원고는 2022. 8. 16. E에게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였던 4,000주의 주식은 원고의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이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은 그 무렵 E에게 도달되었다.

자. E는 2022. 8.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보통주 3,149,305주를 감자비율 99.2%로 유상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절차를 개시하였으며, 위 절차가 모두 종료된 2022. 11. 25. 자본금감소 및 주식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소유 보통주 4,000주의 99.2%인 3,968주가 소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35조 제2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피고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므로,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2. 1. 1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주발행가액(1주당 275,000원)을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으로 949,850,000원(= 3,454주 × 2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2.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매수청구권과 같은 형성권은 그 권리의 내용대로 행사되어야 그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3,454주에 관해서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의 내용과 상이한 4,000주에 관하여 주식 매수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법률관계 형성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주의 지위 이전시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의 소각 등을 통해 주식이 멸실되었으므로 채무자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의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 2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아니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민법 제400조(이하, '민법' 기재는 생략한다)는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 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민법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고(제401조),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제403조).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제1항)(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참조).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민법 제400조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지급기한의 다음날인 2022. 2. 13.부터 피고의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가 성립한 이후의 시점인 2022. 11. 25. 주식의 감소에 원고나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불능이 된 이 사건 주식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22.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항 및 이 사건 변경합의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며,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가 보유한 신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주식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의하면 1주당 매수가액(270,000원)과 주식 매수청구의 대상(원고가 보유한 신주),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피고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모두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인 주식의 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매수청구가 적법하므로, 원고가 위 내용증명에서 2021. 1. 20. 피고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소멸한 주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성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② E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가 없고,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2.

1. 12.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의 통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식양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2022. 1.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2022. 3. 16. 주식매매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22. 7. 1. 원고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2. 9. 30.에는 피고의 의무는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 3,454주에 관한 매매대금 949,850,000원을 넘어설 수 없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위 3,454주에 관한 매매대금만을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이 2022. 12. 7. '피고는 2023. 1. 31.까지 원고에게 949,8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자, 피고는 2022. 12. 20. E가 2022. 11. 25. 유상감자를 하여 원고 소유 주식 대부분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였다. 매수인인 피고가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도인인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이행의 준비는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혜

판사정우채

판사남원석